성주군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5. . .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교급식의 실시에 소요되는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(「학교급식법 시행령」 제7조5항 - 2003.12.30)가 마련됨으로써, 우수농산물에 대한 학교급식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, 나아가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의 도모 및 품질이 우수한 농·수·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·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조약 및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지원 **(안 제3조)**

나. 지원대상은 성주군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「학교급식법」 제4조에 명시된 학교 **(안 제4조)**

다.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·수·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. **(안 제5조제1항)**

라.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의 내역,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 위원회를 설치·운영**(안 제7조)**

마. 군수는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,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**(안 제9조)**

3. 내용 : 붙임

4. 참고사항 : 붙임

○ 관련법령 발췌 : 붙임참조
○ 예산관련사항 : 예산반영
○ 기타참고사항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학교급식법 시행령」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, 품질이 우수한 농·수·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학교급식"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「학교급식법」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
2. "우수 농·수·축산물"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·수·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.
3. "식품비"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, 부식, 간식 등을 조리·가공·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·수·축산물 구입 및 우수 농·수·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의 구입비를 말한다.
4. "식재료"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·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.
5. "지원대상자"라 함은 「학교급식법」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.
6. "식재료 공급자"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·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학교급식 식품비 지원) ①군수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·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조약 및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성주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·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.

제4조(지원대상) 지원대상은 성주군 관내에 소재하며, 「학교급식법」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으로 한다.

제5조(우수 농·수·축산물 사용) ①군수와 성주교육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

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·수·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②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, 급식체계,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.

제6조(지원신청)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초·중학교는 성주교육장에게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지원대상자의 명칭,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
2. 급식시설, 설비의 위치와 규모
3.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
4. 우수 농·수·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
5. 급식시행계획
6.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

②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, 군수는 이를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③지원신청시기, 절차, 서식,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7조(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) ①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대상자의 선정과 지원규모와 내역,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군수가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.

1. 부군수 및 업무담당과장
2. 성주교육청 급식업무 관련 부서장
3. 군의회의원
4. 학부모 단체
5. 교원 단체
6. 영양사 단체
7. 농민단체
8. 사회단체
9. 농·축산업협동조합

10.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
④회의록 작성등을 위하여 서기 1인을 두며, 서기는 학교급식지원업무담당주사가 된다.

⑤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, 공무원 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.

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
2. 지원규모 및 내역, 방법
3. 제8조의 정산보고서 검토
4. 학교급식의 위생, 영양, 급식재료에 관한 감시
5.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및 위임받은 사항

⑧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8조(급식학교 등의 의무) ①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 농·수·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.

②급식학교의 장은 식품비 사용내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지도·감독) ①군수는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,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
②군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·수·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,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